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4. 25.

종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3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4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7. 4. 2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김 종 열

### 가. 개정이유

공연법령 및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시행으로 종전에 서울특별시조례 또는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하였던 공연장설치허가 및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개정골자

- 수수료 징수항목에 공연장 설치허가 3개항목 신설 (안 제3조 관련, 별표)
  -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1건/50,000원
  -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25,000원
  -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5,000원
- 수수료 징수항목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관련사항 3개항목 신설 (안 제3조 관련, 별표)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1건/2,000원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1,000원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1,000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공연법 제7조와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조및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및 지도, 감독 권한과 음반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였던 공연장 설치 허가및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96. 6. 3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공연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및 제4호와 '96. 6. 7일부터 전문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

○ 동 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6. 6. 7. 공연법시행령은 '96. 6. 30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과 공연장 설치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동 조례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과 수수료 미징수 등의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본 조례안 개정전 수수료 징수실적이 있는 지?
- 답변요지(탁정웅 문화계장) : 30건 징수하였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데 이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요지(김종열 세무1과장) : 종전 시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였던 바, 시 조례가 폐지되지 않아 시 조례에 의거 징수하였음.
- 질의요지(김세창 위원) : 본 조례안 개정전 수수료와 개정후의 수수료 금액은 동일한가?
- 답변요지(김종열 세무1과장) : 동일함.
- 질의요지(김세창 위원) : 금액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조례안 개정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야 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김종열 세무1과장)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5

제출년월일 : 1997.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改定理由

공연법령 및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시행으로 종전에 서울특별시조례 또는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하였던 공연장설치허가 및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 2. 主要改定骨子

가. 수수료 징수항목에 공연장 설치허가 관련사항 3개항목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1건/50,000원
-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25,000원
-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5,000원

나. 수수료 징수항목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관련사항 3개항목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1건/2,000원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1,000원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1,000원

## 3. 改定根據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28조
- 공연법(1995.12.29 법률 제5,074호) 제7조
- 공연법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80호) 제7조, 제10조, 제13조 및 제25조 제2항제3호, 제4호
-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12.6 법률 제5,061호) 제2조제6호, 제7조, 제9조, 제10조
-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1996.6.4 법률 제15,015호) 제6조, 제8조, 제9조, 제29조제2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해당없음

- \* 별 첨 :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제목중 “(24종)”을 “(30종)” 으로 하고, 동호 가목의 내용란에 (10)내지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나목의 내용란에 (16)내지 (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10)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1건	50,000원	
(11)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25,000원	
(12)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16)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또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등록신청	1건	2,000원	
(17)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또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18)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또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24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5)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신 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30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10) 공연장설치허가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원</td> <td></td> </tr> <tr> <td>(11)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25,000원</td> <td></td> </tr> <tr> <td>(12)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원</td> <td></td> </tr> <tr> <td>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5)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16)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 록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원</td> <td></td> </tr> <tr> <td>(17)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 록사항 변경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원</td> <td></td> </tr> <tr> <td>(18)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록 중 재교부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10) 공연장설치허가신청	1건	50,000원		(11)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25,000원		(12)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5) (현행과 같음)				(16)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 록신청	1건	2,000원		(17)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 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18)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록 중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10) 공연장설치허가신청	1건	50,000원																																																																							
(11)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25,000원																																																																							
(12)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5) (현행과 같음)																																																																									
(16)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 록신청	1건	2,000원																																																																							
(17)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 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18)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 오물대여업 또는 비디 오물 감상실업)의 등록 중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